議 案 檢 討 報 告 書

1. 發議 또는 提出者 : 大田直轄市長

2. 件　　名 : 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

3. 案 件 要 旨 : 別 添 參 照

4. 檢 討 意 見 : 別 添 參 照

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.

1994年 8月　　日

文 敎 · 社 會 委 員 會

專門委員 金 鎭 鎬

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

檢 討 報 告 書

1994 . 8 .

文 敎 社 會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

檢 討 報 告

이 條例 制定案은 1994年 8月 19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4年 8月 22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.

1. 提 案 理 由

○ '89. 1. 1 直轄市 昇格으로 忠南道와 大田市가 分離됨에 따라 '89. 4. 4 大統領 公約事業中 勤勞福祉會館 建立支援 事業으로

○ 그동안 우리시 管內 2,479개의 事業體에 從事하는 12만여 勤勞者들의 便益施設은 물론 福祉增進 全般에 필요한 福祉施設이 없고, 現在 賃貸使用中인 勤勞團體 事務室을 確保하여 勤勞者의 구심役割을 圖謀하는데 勤勞綜合福祉館 建立 運營 切實하며

○ '94. 7. 1. 旣 竣工된 勤勞福祉館의 開館·運營에 必要한 勤勞綜合福祉管 設置 및 運營條例를 制定코자 함.

2. 主 要 骨 子

가. 勤勞者의 經濟·社會·文化的인 生活의 向上과 福祉增進을 위한 勤勞綜合福祉館 設置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. (案 第1條)

나. 勤勞綜合福祉館의 事務規定 (案 第3條)

- 勤勞者의 實費負擔으로 利用할 수 있는 經濟·社會·文化 등 勤勞者의 生活便益 增進
- 勤勞者 就業促進에 寄與하는 無料職業相談 및 就業斡旋
- 勤勞組合 또는 勞·使 共同으로 實施하는 各種敎育, 會議 등 集會施設 實費供與

다. 動勞綜合福祉館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보하며, 所屬 職員의 職級과 定員은 市長이 따로 정함. (案 第4條, 第5條)

라. 使用料의 徵收는 8種으로 區分하여 5,000원부터 40,000원 까지 徵收할 수 있도록 하고 專門業種 (이·미용실, 식당)등은 市中料金의 80%以下를 徵收하도록 規定함 (案 第7條)

마. 福祉館의 利用은 大田直轄市內에 居住하는 勤勞者, 低所得層 市民과 一般市民 및 其他 市長이 認定하는 者로 規定함 (案 第10條)

3. 檢 討 意 見

○ 本 案件은 勤勞者들의 福祉向上과 勤勞意慾 鼓吹등을 위하여 大田直轄市 勞動綜合福祉館을 設置하고 이의 運營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코자 하는 것으로써 主要 檢討內容을 報告드리면 다음과 같음.

먼저 勞動綜合福祉館 建立事業의 推進經過 및 規模에 대하여 報告드리면

本 勞動綜合福祉館은 지난 89年 4月 大統領의 公約事業으로 그 建立이 推進되어 西區 屯山洞 1304番地에 敷地 1,000평을 確保하고 '93. 5. 4. 工事에 着手 14個月여 만인 '94. 7. 1일

竣工되었으며 國費 6億 1,100萬원, 市費 22億, 3,100萬원등 總 28億 4,200萬원의 事業費를 投入, 연건평 993.6평 (地下 1층, 地上 5층)의 規模로 建立되었음.

다음은 本 條例案의 主要內容에 대하여 報告드리면

첫째, 福祉館의 職制에 관한 事項을 案 第4條와 5條에 規定하고 있는바 本 福祉館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보하는 館長이하 總 8人의 公務員으로 構成토록 하였으며 組織 및 定員에 관한 內務部 長官의 承認을 得한 事項이 되겠음 (內務部 지기 12200 -146. '94. 8. 10)

둘째, 福祉館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案 第3條에 規定하고 있는바 福祉館은 勤勞者들의 生活便益 增進을 위하여 禮式場을 兼用한

大講堂의 運營 및 취미교실, 구판장, 이·미용실 運營등의 業務와 就業相談, 施設管理의 業務등 勤勞者들의 福祉增進에 관한 業務를 擔當토록 하였음.

셋째, 福祉館의 利用에 관한 事項을 案 第6條 내지 第12條에 規定하고 있는바 本 福祉館의 利用 對象者는 勤勞者와 抵所得市民

其他 市管內에 居住하는 一般市民으로 하고 있으며 施設을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館長의 事前許可를 得하고 소정의 使用料를 納付한 후 使用토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本 會館 利用對象者의 範圍를 全 市民으로 하고 있음은 勤勞者들의 福祉向上을 主目的으로 하는 本 會館의 設立趣旨를

다소 희석시킬 憂慮가 있으니 特定施設物 使用등에 따른 競合시 優先順位 附與등의 基準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됨.

넷째, 本 會館의 運營에 관한 事項을 案 第13條에 規定하여 會館은 市 直營을 原則으로 하되 다만, 부득이한 경우 委託運營할 수도 있도록 하였는바 事後 管理運營에 있어서는 명실공히 勤勞者 福祉增進만을 追求할 수 있는 專門 運營機構에 委託運營될 수 있도록 충분한 事前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

또한 施設設置에 있어서는 勞動部의 「勞動福祉會館 및 勤勞者 綜合 福祉館 運營指針」에 의하면 賃貸收益만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保有하거나 이를 위한 事業에 供與될 수 없도록 規定되어 있는바

市가 暫定的으로 이·미용실, 구판장, 식당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委託運營코자 함은 자칫 勤勞者에 대한 福祉增進보다는 營利 追求를 위한 運營으로 轉落되어 公益性을 害할 憂慮가

豫想되며 向後 本 勤勞者 綜合福祉館의 運營全般을 勞動部指針에 例示된 勤勞福祉公社등에 委託運營하지 않고 勤勞者團體등에 委託運營할 境遇 公益을 目的으로 設置된 公共施設이 營利를 目的으로 한 施設로 轉落할 憂慮를 排除할 수 없으므로

本 會館의 施設設置 및 委託運營問題는 勞動部의 「勞動福祉會館 및 勤勞者 綜合 福祉館 運營指針」을 엄수하여 事前對策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.

ㅇ. 以上에서와 같이 本 「大田直轄市 勞動綜合福祉館 設置 및 運營條例案」은 勤勞者들의 福祉厚生등 勤勞者들을 위한 諸般事業들을

推進하기 위하여 「大田直轄市 勞動綜合福祉館」을 設置하고 이의 運營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키 위한 것으로써 準備段階에서부터 충분한 事前檢討와 對策이 마련되어져야 될 것으로 思科됨.